

#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8,800,000	24,264,000
일반회계	700,000,000	21,000,000
특별회계	108,800,000	3,264,000
공기업특별회계	51,000,000	1,530,000
상수도공기업	23,000,000	690,000
하수도공기업	28,000,000	840,000
기타특별회계	57,800,000	1,734,000
의료급여기금사업	2,388,714	71,661
수질개선사업	475,319	14,260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916,500	27,49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600	378
주택사업특별회계	3,338,777	100,163
하천골재사업	3,507,090	105,213
주차장사업	5,000,000	150,00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32,000,000	960,000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10,161,000	304,830

제 2 조 세입세출·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예비비는 2,744,56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경비(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는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부서간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